

## 한국의 진술분석 활용현황: 서유럽 국가와의 비교

한 유 화

박 광 배<sup>†</sup>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진술분석의 한국 내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사건 해결에 진술분석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의 서유럽 국가와 한국의 진술분석 진행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진술분석은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되며, 진술분석에는 주로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 절차가 활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의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진술분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스위스와 한국에서는 진술분석 결과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활용되고는 있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는 판례를 통해 재판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그 의견서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전문가 의견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전문가 증언의 품질 평가 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가 개발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진술분석의 발전을 위해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향후 정책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증거능력, 활용 현황, 비교연구

<sup>†</sup> 교신저자 : 박광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 043-261-21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진술분석(Statement Analysis)은 범죄 사건의 용의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허구(거짓)인지 즉,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진술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법이다. 진술분석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credibility)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개발하면서 점차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심리생리적 지표(psychophysiological indicator)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반면, 진술 내용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Vrij, 2008). 특히 독일은 1950년대 이후부터 형사사건,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분석의 결과를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의 형태로 제시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해 오고 있다.

독일의 법정에서 이처럼 활발하게 진술분석 결과가 활용됨으로써 독일과 스웨덴의 학자들(Arntzen, 1970, 1983; Littmann & Szweczyk, 1983; Trankell, 1972; Undeutsch, 1967, 1982)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 및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진술분석은 이 학자들이 수집한 자료를 통합 및 정교화하여 만들어진 증거들을 기반으로 공식적인 진술 신빙성 평가의 절차로 발전되었다(Köhnken & Steller, 1988). 이 절차가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의 실무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술분석 기법 중 하나인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nalysis; 이하 SVA)이다.

Vrij(2005)는 SVA의 일부인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이하 CBCA)에 대한 37개의 연구를 개관하면서 CBCA의 정확성을 보고한 21개의 연구에서 CBCA의 전반적인 정확성이 낮게는 65%에서 높게는 90%까지 보고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Parker와

Brown(2000)의 현장 연구에서는 CBCA의 정확성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술분석 기법의 정확성이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법 전문가들은 진술분석 결과의 활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의적인 태도는 재판에서 진술분석 결과가 증거로써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잘 나타나고 있다.

법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진술분석의 결과는 특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과 같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이외의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사실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증언)과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평가 결과일 것이다. 또한 재판의 양 당사자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분석 결과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진술분석의 실시 건수는 113건에 달한다(박종선, 2016). 이러한 상황에서의 진술분석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활용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진술분석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술분석의 기초를 확립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히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 즉,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 활용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 진술분석의 발전과 그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하기 위한 지표들 중 심리생리적 반응에 기초

한 지표들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진술내용에 기초한 연구들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Vrij, 2008). 특히 독일과 스웨덴은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바, 진술분석 결과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술분석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술분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결과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와 한국의 활용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서유럽 국가와 한국의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 활용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 진술분석의 절차적인 타당성을 높이고 그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독일, 스웨덴, 스위스와 한국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술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각 국가에서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 2)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술분석의 실무적 절차를 비교하여, 3)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진술분석 절차의 개선 방안과 그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진술분석의 결과가 법적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건의 용의자,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사건 해결을 위해 진술분석을 활용하는 국가들의 실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및 비교하여 향후 진술분석 기법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방법

각국의 진술분석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심층면담 방법을 혼용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각국의 진술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의 특성과 진술분석 기법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파악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각국의 진술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사법체계 내에서의 실무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과 심층면담 방법을 혼용한 것은 공식적인 문헌 및 발표 자료들이 통계적 수치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각국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 6명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로 1인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진술분석이 세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1인씩 총 3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악하고자 했던 내용은 각 국가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체계의 특성 즉, 각 국가의 진술분석 실시 및 활용 체계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 국가를 대표하는 전문가 1인(한국의 경우 각 단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인)을 대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전문가 선정은 진술분석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독일의 Gunter Köhnken 박사의 추천을 바탕으로 하였다. 서유럽의 전문가 3인은 모두 범죄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였고,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진술분석 관련 연구 업적도 풍부하였다. 경력과 관련된 이외의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전문가 3인은 공통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구 경력과 학위는 활동하는 단계에 따라 달랐지만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심층면담은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한 후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불필요한 질문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국한하여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각 질문의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한국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일대일로 진행되었고 본 연구의 연구자 중 1인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 30분이었다. 서유럽 국가의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이메일을 통한 서면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질문과 응답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였다. 서유럽 전문가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답변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1-2회 정도 이메일로 추가 답변을 제공하였다. 면담 내용은 각 국의 법체계, 진술분석의 진행, 진술분석의 활용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및 정리되었다.

표 1.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의 내용

번호	질문 내용
1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절차
2	진술분석의 대상
3	진술분석의 의뢰절차 및 분석 결과의 보고절차
4	진술분석 전담 기관의 유무
5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실시 여부
6	진술분석 결과보고 양식의 유무 및 각 전문가의 보고서 양식
7	진술분석 결과의 증거 인정 여부 및 관련 법 조항
8	진술분석 전문가 수
9	진술분석 전문가 자격 기준
10	진술분석의 의뢰 빈도
11	진술분석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의견
12	진술분석 결과의 사건 해결 기여도에 대한 개인적 의견
13	진술분석과 관련된 (각 국가의) 특별한 점

## 각 국의 진술분석 활용 현황

### 독일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독일 전문가의 답변에 따르면, 독일에서 진술분석은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술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될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전문가 명단에 등록된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전문가 명단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추천한 학자나 실무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성이 높은 학자들로 구성된다. 진술분석을 의뢰받은 전문가는 진술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찰

또는 법원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는 사건과 신빙성 판단의 대상자(증인)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는 전체 진술분석 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가설<sup>1)</sup>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사건과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전체 진술분석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가설들이 정리된 후에는 이 가설들의 진위여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중히 면담 준비를 하여 면담일정을 확정된 후 증인 및 증인의 부모와 면담을 실시한다. 독일의 진술분석 전문가는 의뢰된 사건의 증인만을 면담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증인이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를 예외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모든 면담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 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면담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법정의 증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즉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가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담은 거의 언제나 녹음되며, 진술분석에는 필사본이 사용된다. 면담을 녹음할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녹음을 하고 있으며,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 녹

음된 자료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전체 분석절차가 끝나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다. 의견서의 양식은 전문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견서 내용에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사용된 심리검사 결과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에 최종의견이 제시된다. 법원은 진술분석을 진행한 전문가를 재판의 전문가 증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전문가 증인은 해당 사건의 모든 공판에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모든 공판에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언 이외의 다른 증거들도 모두 확인한 후, 제출했던 의견서와는 별개로 법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구두 의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된다. 이 증거를 제시한 후 전문가 증인은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여야 한다.

독일의 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독일에서는 전문가 증인의 증거능력(admissibility of evidence)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9년 독일 대법원은 한 사건(BGH-Urteil vom 30.7.1999 - 1 StR 618/98 [LG Ansbach])에서 전문가 증인의 의견서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the minimum standard of Expert Witness)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문가 증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질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전문가 증인의 의견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첫째, 전문가 증인의 분석은 ‘피고인이 무죄이다’라는 가설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죄라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부정확한 진술이 될 것이므로(피해자의

1) 많은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SVA 절차를 진행하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SVA의 전체 절차를 통하여 검증되는 가설은 증인의 진술이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원인들에 대한 명제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인의 진술은 유도질문에 의해 부정확할 수 있다’가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가설검증 절차가 포함된 진술분석 의견서만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설 수립은 모든 진술분석 절차에서 필수적이다.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므로), 전문가 증인이 전체 진술분석 절차에서 반증(falsification)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설은 “피해자 즉, 증인의 진술은 부정확하다”이다. 두 번째 요건은 전문가 증인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독일의 전문가는 독일에서는 심리검사 중 투사검사(projective test)는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 요건은 전문가의 의견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의견서에서 자신의 의견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진술분석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했는지와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논리 전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 기준들은 모두 전문가가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위의 요건을 갖춘 의견서만이 법정에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표를 제시한 것과 같다.

## 스웨덴

스웨덴 법원은 주로 아동 성폭력 사건과 가정 폭력 사건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술분석을 사용한다(Willén & Strömwall, 2012). 스웨덴의 대법원은 객관적인 진술증거 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은 진술증거의 가중치를 정할 때에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의 예와 그 진술의 평가에 사용되어야 하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언제, 어떻게, 어느 증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것은 주(län) 법원 또는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Sutorius & Kaldal, 2003). 스웨덴의 법정에서는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이 증거들을 사용해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정식 심리(hearing)가 끝난 후에 필사본을 사용하여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이 증거들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스웨덴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관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 있는 셈이다.

Schelin(2007)은 스웨덴 대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하여 그 판결문에서 언급된 증거들을 정리하였다. 이 증거 목록은 확정된 형태가 아니고 스웨덴 대법원의 몇몇 판결들에서 비롯된 것이다(Strömwall, 2010). Schelin(2007)은 다섯 개의 현실 증거들(reality criteria)과 여섯 개의 통제 증거들(control criteria)을 규정하였고, 아동이 증인인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환경(circumstance)을 제시하였다. 현실 증거들은 진실의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되며, 통제 증거는 현실 증거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Willén과 Strömwall(2012)의 연구 결과, 스웨덴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거들 중 ‘논리적 명확성’ 증거만이 거짓 진술과 진실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전문가 증인에게 증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를 의뢰하고, 전문가 증인으로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Edelstam, 1991).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스웨덴의 전문가에 따르면, 법원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들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른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스웨덴의 전문가는 사실을 나타내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견이외의 의견 즉, 진술 증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러나 이 의견은 해당 전문가가 증언한 특정한 증거에 대한 의견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는 '내가 보기에 이 진술은 진실이다'라고 진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유죄다'라고 진술할 수는 없다. 스웨덴에서 전문가 증언은 법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 정보의 역할을 하며, 증거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증인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의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Gumpert, 2003). 그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전문가 증인의 의견서와 의견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비교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프로토콜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구조화된 전문가 증언의 품질 평가 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이다. 이 프로토콜에는 전문가 증인 의견서의 공식적인 구조와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들과 스웨덴의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이 만든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들에 언급된 법정에서의 심리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평가(forensic evaluations)를 위한 일반적인 원리들에 기초한 12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Gumpert, Lindblad와 Grann(2002a)이 개발한 SQX-12는 12개의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12개 준거들은 1) 팀 평가(Team evaluation), 2) (전문가의)아동발달과 아동평가에서의 능력(Competence in child development and assessment), 3) 아동-평가자의 사전 접촉(Previous contact child-evaluator), 4) 평가에서 사용된 정보에 관한 기술(Document of information used during evaluation)과 5) 전문가의 임무에 대한 기술

(Documentation of expert assignment), 6) 주장 내용(Allegation content), 7) 주장 맥락(Allegation context), 8) (아동의)발달적 상태, 인지적 능력, 기억 능력 등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developmental status, cognitive ability, memory capacity etc.), 9)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보고(Report of the child's living situation), 10) 대안적인 해석 (Alternative interpretations), 11) (의견서 내 전문가의)진술 구조(Statement structure), 12) 질에 대한 전반적 추정(Global estimate of quality)이다. 열 두 개의 준거들은 공식적인 면(formal aspects)과 (의견서 내 전문가의)진술 내용으로 다시 범주화된다. 이 준거들의 신뢰도(내적 일관성 지수)는 .75로 높은 수준이었다.

#### 스위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스위스의 전문가에 따르면, 스위스의 진술분석은 주로 법원 또는 검찰 측에서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우 드물게는 피고인 측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진행되기도 한다.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측에서는 주로 전문가에게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견을 요청한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고, 둘째는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측에서 이미 특정한 가설<sup>2)</sup>을 수립한 후 해

2) 예를 들면, 00가 엄마의 암시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로써 자신을 변호하는 진술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암시에 의해서 진술이 작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의뢰하는 측에서 이미 수립한 후 이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는 것이다.

당 가설이 지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진술분석을 진행한 후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독일과는 다르게, 공판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스위스에는 매우 적은 수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며, 여기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 성인도 포함된다. 전문가 자격은 주(canton)마다 다른데, 취리히(Zurich)의 경우 정신과 의사 또는 임상 심리학자들만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스웨덴의 법원은 임상적 관점이 법적 진단을 내리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고 특별히 이들에게 전문가 활동을 허용해 준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도 대법원 판례(U.a. BGE 128 I 81, 82 ff.; BGer, Urteil v. 20.12.2001, 6P.36/2001, E. 2 und 3)로 진술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이 정해진 바 있다. 스위스의 관례법에서는 진술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SVA를 선택하였다. 또한 독일에서와 같이 신빙성 평가와 관련된 최소 기준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었는데, 그 내용은 1) 진술분석의 결론이 가설검증 절차를 통해 얻어져야 한다는 것, 2)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3) 동기(motivation)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 4) 진술의 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5) 진술이 얻어진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스위스의 전문가들은 스위스에서 진술분석은 독일에서만큼 활발

히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술분석의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특히 법원은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와 심리적 문제를 가진 성인들의 진술에 대한 확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전문가가 파악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이라고 하였다. 위의 판례(U.a. BGE 128 I 81, 82 ff.; BGer, Urteil v. 20.12.2001, 6P.36/2001, E. 2 und 3)에서는 전문가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건은 제 3자의 영향을 받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전문가의 진술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

본 연구에서 전문가 면담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진술분석은 사건 해결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분석은 경찰 지청의 추천을 받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진술분석가에게 진술분석이 의뢰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분석은 진술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검찰청에서 위촉한 '전문 수사 자문위원'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의뢰함으로써 진행된다. 검찰청의 전문 수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의 진술분석팀에게 진술분석이 의뢰되기도 한다.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분석은 법원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 심리위원'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의



뢰된다. 법원의 전문 심리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전문심리위원규칙)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통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을 면담한 결과, 각 단계의 진술분석 결과 보고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자와 면담했던 한 전문심리위원은 법원과 검찰의 전문 심리위원 자격으로 진술분석을 의뢰받아 진행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언은 하지 않지만(증인 선서를 하지 않음), 법정에 출석하기를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진술분석과 또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은 주로 서류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분석의 결과를 보고할 때 경찰 측에서 권장하는 의견서의 양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의견서 양식에는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검사 결과와 분석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면담자의 능력과 면담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에 실시가 가능했던 심리검사 또는 분석 결과를 선택적으로 보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사건해결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전문가로서 각기 다른 단계에서 진술분석 전문가로 위촉되어 진술분석을 의뢰받는 경우, 각 단계에서 진술분석을 위해 주어지는 자료의 질과 충분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진술분석의 활용 현황 비교<sup>3)</sup>

3) 각 국의 진술분석 활용 현황을 비교한 표를 부

### 각 국의 진술분석 실시 절차 비교

#### 진술분석 의뢰

진술분석 절차는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자 또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 검찰 또는 피고인측이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요청함으로써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국의 진술분석은 일반적으로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에서 특정 전문가를 선택하여,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일의 전문가는 독일의 경우, 주로 검찰 및 법원에서 진술분석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의 전문가 중 한 명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하고, 전문가는 항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아닌 검찰측에서 진술분석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편파된 입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전문가 또한 스위스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전문가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으며, 스웨덴의 전문가는 스웨덴의 경우 법원뿐만 아니라 재판의 양 당사자측 모두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스웨덴에서 법원에 의해 전문가가 지명되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은 일이며, 주로 재판의 양 당사자측이 진술분석을 의뢰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전문가는 재판의 당사자들은 활동하고 있는 진술분석가라면 누구에게라도 진술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이들에 의한 증

록 1에 제시하였다.

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단, 이 증거에 대한 가중치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사건의 종류 또는 증거의 질(전문가의 의견서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 모두에서 각각 진술분석이 진행될 수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에 등록된 전문가들이 진술분석을 의뢰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대검찰청의 심리분석실 진술분석팀에서 진술분석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독일, 스웨덴 및 스위스와 한국 진술분석 의뢰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재판단계에서 진술분석을 의뢰하지만 한국은 사건해결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진술분석 기법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분석 기법은 SVA 절차였다. 면담에 참여한 독일, 스웨덴, 스위스와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공히 SVA 절차를 사용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절차의 많은 부분은 분석을 진행하는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절차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준거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할 때에 한국의 한 전문가는 CBCA 준거들과 RM의 준거들을 함께 사용한다고 답변하였고, 각 전문가들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SVA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임상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들을 혼용함으로써 진술분석

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면담에 참여한 각 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기법, 어떤 준거들을 사용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는가 보다는 진술내용 분석을 하기에 충분한 양과 높은 질의 진술을 확보하는 면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한국의 한 전문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면담과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이 구분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였으며, 독일의 전문가는 면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진술분석을 의뢰받으면 거의 언제나 본인 스스로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변하였다.

#### 진술분석 결과 활용 현황 비교

#####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의 역할

독일과 스웨덴의 전문가 면담 결과,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진술분석을 실시한 전문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열리는 모든 공판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서 이외에 별도로 법원에 출석하여 의뢰받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결론을 전문가 증언의 형태로 구두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일의 전문가는 이것이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정에서 제시되는 다른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를 즉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스위스의 전문가에 따르면, 자신은 서면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판에 참석하

여 증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전문가 또한 스웨덴에서도 진술분석을 실시한 전문가의 의견이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스웨덴 모두 제시된 전문가 증언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면담에 참여한 한국의 진술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진술분석을 실시한 전문가가 법정에서 소환되어 자신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보고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및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과는 다른 형태이다. 독일과 스웨덴 전문가들의 의견은 증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의 결론을 제시한다. 반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증인 자격으로 소환되지 않으며, 주로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한다. 즉,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진술분석 전문가 모두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의견은 독일과 스웨덴의 법정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 진술분석 결과 평가

진술분석의 결과는 전문가들이 공판 전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그들의 법정 내 증언을 통해서 알려지며,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서 재판 관계자들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 받는다. 독일의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법원에서 진술분석을 의뢰했던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위해 검찰 측에서 또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여 법원 전문가의 의견서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999년 독일 대법원 판례에

서 전문가의 의견서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가설검증 절차, 투명성, 재현가능성과 이해가능성 등)을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이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서가 따라야할 일종의 지침을 제시한 것과 같다. 스웨덴의 진술분석 활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스웨덴에서는 전문가 의견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지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SQX-12)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 이러한 지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전문가 증언에 대한 증명력이 평가되는 기준은 전문가의 자격에 있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서가 충실하고 논리적인지 즉, '의견서의 질'이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순수하게 법관의 판단에 의해 전문가 의견서가 평가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하였던 스위스의 진술분석 전문가는 스위스의 법 전문가들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질을 전문가들의 명성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스위스에서는 진술분석 의견서의 평가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 국내 발전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진술분석 기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VA 절차의 개발에 크게 기여한 학자들이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과 스위스의 현재 진술분석 활용 현황과 한국의 진술분석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진술분석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와 한국의 진술분석 활용을 비교한 결과, 네 국가 모두에서 SVA 절차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은 법정에서 제시될 수 있지만 증명력의 인정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몇 가지 중요한 환경 및 절차상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진술분석 전문가의 자격기준 재설정

현재 한국에서 진술분석이 진행되는 방식은 독일, 스웨덴과 스위스의 그것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국내의 진술분석이 사건해결의 모든 단계 즉,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의 자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수사의 단계가 달라진다고 해서 진술분석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술분석 전문가 명단에 등록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 기준은 단지 '심리학자(psychologist)' 즉, 공식적으로 심리학 학위를 가진 자라는 것이다. 독일의 전문가는 이것이 독일의 진술분석 전문가 명단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해서만 들어지며, 이들의 추천은 상당부분 새롭게 추천되는 피추천인의 명성(reputation)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스웨덴의 전

문가는 스웨덴의 경우,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지만,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을 할 때에 자격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스위스의 전문가는 스위스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다른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칙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각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의뢰되는 전문가들의 자격기준이 모두 상이한데, 그 기준은 사건해결을 위한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각 단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각 경찰 지청의 추천을 받아 진술분석가의 명단에 등록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진술분석이 의뢰된다. 이 단계에서 활동하는 진술분석 전문가 자격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얻을 수 있고 교육과정동안 이수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분석가가 아동발달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주로 경찰 조사에 진술조력인<sup>4)</sup>이 동석하고 진술하는 장면을 녹화한 CD를 사용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분석가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은 진술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면담'을 통해 진

4)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은 진술조력인들이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에 상주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돕고 있다.

술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풍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해결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단계의 진술분석 전문가 자격을 상향조정하고, 향후에는 이들의 면담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진술분석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면담에서 경찰관과 진술분석가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청에서 위촉한 '전문 수사 자문위원'에게 진술 신빙성 평가가 의뢰되거나, 심리분석실의 진술분석팀으로 진술분석이 의뢰된다. 검찰청의 '전문 수사 자문위원'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술분석팀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대검찰청의 채용시험을 통과한 후 관련 교육을 받는다. 심리분석실의 채용 조건 중 하나는 '심리학 전공자'로 명시되어 있고, '전문 수사 자문위원'의 자격은 해당 전문가의 업적에 근거하여 평가되므로, 이 단계에서 진술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자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보다는 진술분석 업무에 적합하고 그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진행되는 진술분석은 법원의 위촉을 받은 '전문 심리위원'에게 의뢰되는데, '전문 심리위원'에 위촉되기 위해서는 통상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가의 자격기준이 상이할 경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진술분석을 통한 결론의 타당성이 보장되려면 진술을 이끌어내는 면담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진술분석이 주로 진행되는 사건 즉, 아동 성

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서 질이 좋은,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및 해당 아동의 언어적·인지적 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수사 단계에 따라 다른 자격기준은 이러한 전문가의 지식 수준에서의 차이를 야기한다. 이것은 곧 어떤 수사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누구에게 의뢰되느냐에 따라 진술의 질과 그 신빙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술분석은 사건 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많은 경우 최대 세 번의 면담과 진술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반복적인 진술 면담이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반복될수록 CBCA의 특정 준거(구조화되지 않은 표현)는 진실과 거짓의 진술을 구별하기 위한 민감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가능하다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은 진술분석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점차적으로 사건해결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진술분석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진술분석 결과의 중요성은 사건해결의 각 단계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건해결의 초기 단계라고 하여서 전문가의 자격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초기 진술이 전체 진술분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초

기 단계일수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이 마땅할 것이다. 특히, 면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면담 대상의 특성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자질이므로, 아동의 심리적 특성 및 면담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은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박상기(2016)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원의 전문 심리위원들조차도 그들의 임상경험, 경력,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에서의 차이가 일관되고 통일적인 결론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진술분석 전문가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제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의 경우 진술 분석 전문가의 명단에 등록되기 위한 최소 기준은 '심리학 전공자'이다. 독일의 전문가는 이것이 독일 심화 수준의 심리학 교육과정이 가지는 특성상,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일정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화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졸업하기 위해 심리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강의와 세미나를 수강하고 실무경험을 쌓는다. 졸업을 위한 시험은 자신의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통과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술분석 전문가의 명단이 몇몇 전문가의 추천과 한 전문가의 명성에 기초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문가가 일종의 심리평가라고 할

수 있는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할만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진술분석이 증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일종의 심리평가라는 점에서 진술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심리평가의 실시 및 보고서 작성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짧은 시간동안에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문가 교육에 물질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심도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심리학회 사무국으로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진술분석전문가 신규 희망자 신청 안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이론교육과 더불어 30시간의 실습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습 기간동안에 두건의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의견서는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최종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심사에 통과해야만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활동중인 전문가와의 면담에 따르면, 활동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통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진술분석 전문가 교육과정 지원자력이 높아지고, 교육과정이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은 진술분석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3년 교육과정과 진술분석 결과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되어 심화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으로 교육 및 실습기간동안의 진술분석 결과 보고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슈퍼비전을 받도록 정하여 이 교육과정을 마친 자라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여겨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해당 실무영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진술분석 결과 보고를 위한 지침 개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술분석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분석은 일정한 양식에 준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진술분석이 '전문 수사 자문위원'에게 의뢰되지 않고, 심리 분석실로 의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절차로 진행되는 진술분석은 그 결과 보고 양식을 전적으로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각 국의 전문가 면담 결과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과 스위스 역시, 결과의 보고 양식에 대해서는 모두 전문가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판례를 통해 전문가 의견서의 최소요건이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요건들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한다. 독일의 경우, 1999년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최소

요건을 제시한 판결 이후 전문가의 의견서 질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상기, 2016).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진술분석은 사건의 특성 및 피해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가설들을 평가하여 진술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따라서 진술분석 결과보고를 위한 지침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실히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진술분석의 전체 절차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변형들을 제외하고, 큰 틀 안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위주로 지침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건파일을 검토한 후 생성되는 모든 가설들을 의견서에 기술하도록 하거나, 모든 가설들에 대한 검증방법과 기각 여부 결정을 위한 논리를 기술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가설 기각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더불어서 이러한 지침의 내용에 기초하여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개발한다면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는 질 좋은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식이 있다면 사건에 관계된 경찰, 검찰 또는 법관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제출된 증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이 양식은 반드시 융통성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진술분석 결과 평가 도구의 개발 및 도입

현재 한국의 진술분석 결과 평가는 독일의 결과 평가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해당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방식이다. 이것에 더하여 독일은 1999년 판례에서 수립된 '전문가 의견서의 최소 요건'에 기초하여 의견서를 평가 받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절차는 진술분석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에 가깝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질, 전문가가 결론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증언의 증명력(probativ value)을 결정하는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의견서 평가 기준이야말로 명백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된 전문가 증언의 질은 그대로 증명력 판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 증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 및 도구가 개발된다면 진술분석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건관계자들도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하여 진술분석 과정과 방법, 결과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증언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기(2016)도 법원이 신빙성 평가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평가척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증언의 품질 평가도구 즉, SQX-12가 좋은 예이다. 이 도구를 기초로 전문가 증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된다면, 이것은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여 증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진술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건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들과 한국의 진술분석 활용 현황을 비교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실시되었다. 진술분석은 단일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이르는 기계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가의 자질 및 경험, 전문가가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 및 과정 등이 진술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엄격한 전문가 자격기준의 설정, 2) 교육과정 개편, 3) 전문가들이 법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견서 작성 지침 개발과 4) 의견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마련.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학문 영역과 실무 영역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지만, 앞서 논의하였던 초기 진술과 면담, 진술분석 결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대학원에서 심리평가 및 상담실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경력이 자격기준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술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은 진술분석 기법과 관련 지식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심리평가 실습을 위주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 보고서 작성과 보고서에 대한 슈퍼비전은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법 전문가들과 함께 진술분석 결과가 이미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서의 필수 요건들을 참고하여 전문가 의견서의 작성 지침과 그 의



견서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내용이 실무에 적절히 적용된다면, 한국의 진술분석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여 진술분석이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박상기 (2016).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독일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4(1), 197-219.
- 박종선 (2016).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 방향-대검예규. *홍익법학*, 17(2), 257-276.
- Arntzen, F. (1970). *Psychologie der Zeugenaussage*. Göttingen: Hogrefe.
- Arntzen, F. (1983). *Psychologie der Zeugenaussage: Systematik der Glaubwürdigkeitsmerkmale*. München, Germany L. C. H. Beck.
- BGer, Urteil v. 20.12.2001, 6P.36/2001, E. 2 und 3
- BGH-Urteil vom 30.7.1999 - 1 StR 618/98 [LG Ansbach]
- Edelstam, H. (1991). *Sakunnigbeviset. En studie rörande användningen av experter inom rättsväsendet. [Expert testimony. A study concerning the use of experts in the judicial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ppsala. Uppsala: Iustus.
- Gumpert, C. (2003). 'Alleged child sexual abuse and expert testimony: a Swedish perspective', in D. Carson and R. Bull (Eds.), *Handbook of Psychology in Legal Contexts*, 2<sup>nd</sup> ed. (pp. 515-531). Chichester: Wiley.
- Gumpert, C. H., Lindblad, F., & Grann, M. (2002). The quality of written expert testimony in alleged child sexual abuse: An empirical study. *Psychology, Crime and Law*, 8(1), 77-92.
- Köhnken, G., & Steller, M. (1988). The evaluation of the credibility of child witness statements in the German procedural system. In G. Davies & J. Drinkwater (Eds.), *The child witness: Do the courts abuse children?* (Issues in Criminological and Legal Psychology, no. 13) (pp. 37-45). Leicester, England: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Littmann, E., & Szewczyk, H. (1983). Zu einigen Kriterien und Ergebnissen forensisch-psychologischer Glaubwürdigkeitsbegutachtung von sexuell missbrauchten Kindern und Jugendlichen. *Forensia*, 4, 55-72.
- Parker, A. D., & Brown, J. (2000). Detection of deception: Statement Validity Analysis as a means of determining truthfulness or falsity of rape allegati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5(2), 237-259.
- Sutorius H. & Kaldal A. (2003). *Bevisprövning vid Sexualbrott. (Sifting of Evidence in Sexual Abuse Cases)*. Nordstedts juridik, Stockholm.
- Schelin, L. (2007). *Bevisvärdering av utsagor i brottmål [Evidence Evaluation of Statements in Criminal Cases]*. Stockholm: Nordstedts juridik.
- Strömwall, L. A. (2010). Assessing reliability by analyzing the verbal content: The case of Sweden. *Forensic psychology in context: Nordic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264-280.
- Trankell, A. (1972). *Reliability of evidence*.

- Stockholm, Sweden: Beckmans.
- U.a. BGE 128 I 81, 82 ff.
- Undeutsch, U. (1967). Beurteilung der Glaubhaftigkeit von Aussagen. In U. Undeutsch (ed.), *Handbuch der Psychologie Vol. 11: Forensische Psychologie* (pp. 26-181). Göttingen, Germany: Hogrefe.
- Undeutsch, U. (1982). Statement Reality Analysis. In A. Trankell (Ed.), *Reconstructing the past: The role of psychologists in criminal trials* (pp. 27-56). Deventer, The Netherlands: Kluwer.
- Vrij, A. (2005).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irst 37 studi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 3-41.
- Vrij, A. (2008). *Detecting lies and deceit: Pitfalls and opportunit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Willén, R. M., & Strömwall, L. A. (2012). Offenders' lies and truths: an evalu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Sweden's criteria for credibility assessment. *Psychology, Crime & Law*, 18(8), 745-758.

1 차원고접수 : 2016. 09. 18.

심사통과접수 : 2016. 11. 15.

최종원고접수 : 2016. 11. 20.

## The Utilization of Statement Analysis in Korea: A Comparison with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Yuhwa Han

Kwangbai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procedure of statement analysis and the present state of its utilization in Korea with those in three Western Europe countries, Germany, Sweden, and Swi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pecific procedure of statement analysis and the different state of the utilization in each country, literature was reviewed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each country's experts who have been currently working in both practical/academic field of statement analysis. Generally, in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the courts have expert lists and the experts would be requested to conduct statement analysis of a witness by the court or a party of the trial. In Korea, statement analysis could be conducted in an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In Germany and Sweden, an expert's testimony based on his/her statement analysis for a witness is admissible to the courts, which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n comparison to the statement analysis expert's testimony in Swiss and Korea. An expert's opinion is regarded as only one piece of informa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German and Swiss courts have the minimum standards for admissible expert's report. In Sweden, there is a scientific assessment tool,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 that would allow triers of fact to assess the quality of expert report, while no such instrument or standard have develope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the four ways to improve the procedural validity and the utilization of statement analysis in Korea were suggested. As these suggestions would effectively strengthen the procedural validity of statement analysis and expand the utilizability of its result in Korea, it ought to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information in the future policy making.

*Key words* : statement analysis, expert's report,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sent state of utilization, comparison study

부록 1. 각 국의 진술분석 활용 현황 비교

비교내용	공통점	차이점/특이점
진술분석 의뢰 대상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전문가 명단의 개별 전문가에게 의뢰됨	한국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의뢰가능/검찰의 진술분석 전담팀
진술분석 대상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심리적 문제(지적 장애 또는 PTSD)를 가진 성인	-
진술분석 기법	SVA의 틀을 따라 진행하되, 전문가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실시여부	실시여부는 전문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정해진 프로토콜은 없지만 개방형 면담을 실시	한국 검찰의 진술분석 전담팀에서는 NICHD 프로토콜을 사용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사용	SVA 절차의 일부로 진술이 의도적으로 작화되었을 것이라는 가설 이외의 모든 다른 가설들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	한국 경찰수사단계에서 CBCA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
진술분석 결과의 활용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결과 보고서에 한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한국 증거인정을 위한 조건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진술분석 결과의 평가	전문가 의견에 대한 질문, 반대신문 등으로 평가	스웨덴 SQX-12라는 평가도구 개발